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23-17호

「상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및 「상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6월 30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조례안 예고

1. 조례명

- 가. 상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
- 나. 상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

2. 조례별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

가. 상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

1) 제정이유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20조 및 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의 2 등에 따라 상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, 사회생활, 직업생활 및 여가 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2) 주요내용

- 가) 조례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) 지원계획 수립(안 제3조)
- 다)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의 위탁(안 제4조)
- 라) 사업지원(안 제5조)
- 마) 다른조례와의 관계(안 제6조)

나. 상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

1) 제정이유

「공동주택관리법」 등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자 제안함.

2) 주요내용

- 가) 조례의 목적 (안 제1조)
- 나) 정의와 책무(안 제2조 및 제3조)
- 다) 추진계획의 수립, 실태조사,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 권고(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)
- 라)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(안 제7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들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7월 6일까지 상주시의회 의장(참조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제·개정 (안)	수 정 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: argentina111@korea.kr

2) 주 소: (우37183)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

3) 팩 스: 054-535-9854 (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)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(전화: 054-537-7845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(<https://www.sangjucouncil.go.kr> → 의회소식 → 공지사항)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: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자치법규안 내용	의견	비고